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340

제출년월일 : 2018년 2월 6일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전시시설 구조 관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
- 나.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토지 용도지구와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의 자동차매매업에 대해 과다 규 제 방지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관리사업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며, 조례 시 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에도 소급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
- 나.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동차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규제 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협의완료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- (5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해당 없음
- (6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17. 10. 12. ~11. 1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 구조문 대비표: 붙임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"소형자동차정비업"을 "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"으로 한다.

별표 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전시시설의 구조 (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 에 한정한다.)	·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,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(Show Window)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-	---

별표 1 주)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별표 1 주)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마목의 도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2항 및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 된 기준을 적용 한다.

별표 2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자동차종합	소형자동차종 합	자동차전문	10/11/1
	정비업	합 정비업	정비업	정비업

별표 2 주)제9호 중 "부분정비업자"를 "자동차전문정비업자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주) 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 한 자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완료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제5조(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) ① 법 제2 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(이하 "정비 업"이라 한다)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혀

- 1. (생략)
- 2.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「국가기술 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 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

가. (생략)

나.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
 비업: 2명 이상. 단, 정비요원 총수
 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

다. (생 략)

② (생 략)

[별표 1]

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(제4조 관련)

구 분	기 준
나. 전시시설 의 구조	•전시시설 외부에서 차 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,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 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. 다만, 사업장 외벽 을 전시용 유리창 (Show Window)등으 로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마. 출구 및 입구	• 전시시설이 12m 이 상의 도로에 붙어있 어야 한다.

개 정 안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(현행과 같음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<u>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</u> ------

_

다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

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(제4조 관련)

구 분	기 준
나. 전시시설 의 구조 (인구 50만 이상의 자치 구에 한정한 다)	(현행과 같음)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주) 3. <u>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</u>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<신설>

[별표 2]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(5조관련)

구분	자동 차종 합정 비업	소형자동 차정비업	자동차 전문정 비업	원동 기전 문정 비업
		이 하	생략	

주) 9. 부분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 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·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정비해야 한다.

- 주) 3. <u>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</u>
 <u>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</u>
 <u>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</u>
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
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
 지 아니한다.
 - 주) 5.
 마목의 도로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2항 및

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

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된

 된 기준을 적용 한다.

[별표 2]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(5조관련)

가 판	자동 차종 합정 비업	소형자동 차종합정 비업	자동차 전문정 비업	원동 기전 문정 비업
		이 하	생략	

주)	<u>9.</u>	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
		·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자동차매매업의 자동차전시시설의 외관 가림시설 설치의무를 완화 해주는 개정으로 자동차전시시설 설치 시 비용이 감소되며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기존 자동차전시시설의 외관 가림시설 설치의무를 완화 해주어 비용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음

4. 작성자

○ 택시물류과 강 승 곤(2133-2343)